



2023년 12월 12일

친애하는 법 집행 동료분들께:

지역 사회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며 매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 집행 기관들(LEA)은 사용 언어에 관계없이 모든 대중과 정확하고 시기 적절한 방식으로 의사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매일 전국의 법 집행 요원들은 증인들, 피해자들 및 대상자들을 인터뷰하고, 그들이 봉사하는 지역 사회에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며, 정보의 흐름을 촉진시키기 위해 전화선과 웹 사이트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영어 능력이 제한된(LEP) 개인들은, 즉 영어를 말하고, 읽고, 쓰고, 또는 이해하는 능력이 제한된 사람들은, 주 및 지역의 법 집행 기관들(LEA)의 보호를 구하거나 의사 소통할 때 더 큰 장애물에 직면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sup>1</sup>

법 집행 기관내에서 언어 장벽을 극복하는것이 중요한 것은 세 가지주요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정확하고 시기 적절한 의사소통은 경찰관과 대중을 보호합니다. 위협이나 기타 중요한 정보를 잘못 이해할 때 불필요하게 생명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영어 능력이 제한된(LEP) 가해자,피해자 또는 목격자와 정확하고 시기 적절한 방식으로 의사소통이 되지않아 비극적인 결과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sup>2</sup> 둘째, 번역, 통역및 기타 언어 지원 서비스의 사용은 법 집행 기관들(LEA)이 언어 장벽에 관계없이 전체 커뮤니티에 공평하게 봉사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커뮤니티의 신뢰와 포용을 촉진합니다. 마지막으로, 정확하고 시기 적절한 언어 지원은 증인의 증언 및 기타 증거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법 집행 임무의 핵심이며 법정에서 정의를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법 집행 기관들(LEA)은 대부분 연방 보조금기금의 형태로 연방 재정 지원을 받습니다. 이러한 지원의 조건 중 하나는 수혜자에 의한 출신 국가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인 개정된 1964년민권법 타이틀 6(Title VI)를, 42 U.S.C. § 2000d 이하 참조(Title VI), 준수하는 것입니다. 금전의 수여 또는 교부금이 연방 재정 지원의 가장 명확한 예 이지만, 법 집행 기관들(LEA)이 연방 재산 또는 토지를 시장 가치보다 낮게 사용 또는 임대하는 경우, 연방 교육, 연방 인력 및 연방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도 법 집행 기관들(LEA)에 타이틀 6(Title VI)의 언어 액세스 요구 사항을 적용합니다.

<sup>1</sup> 예를 들어, 바라티 A. 벤카트라만, *번역 중에 생기는 손실: 제한된 영어 능숙 인구와 경찰*, 경찰서장(Bharathi A. Venkatraman, *Lost in Translation*) (2006), <https://perma.cc/R6H5-TDY3>. 참조

<sup>2</sup> 크리스 보엣 과 마리아 산타나, (한 여성의 모국어로 된 항변이 번역되지 않아 세 사람의 삶을 잃다) (Chris Boyette & Maria Santana, (A Woman's Plea in her Native Language Goes Untranslated, Three Lives are Lost), CNN .COM (2014 년 2 월 20 일), <https://perma.cc/4P3L-ECDD>; <https://perma.cc/4P3L-ECDD>; 레일라 밀러, 과테말라 남성 총격 사건 9 년 후, LAPD 경찰관, 원주민 언어 식별에 도움을 받음 Leila Miller, Nine Years After Guatemalan Man's Shooting, LAPD Officers Get Help to Identify Indigenous Languages). LA 타임즈 (2019 년 12 월 12 일), <https://perma.cc/PNM4-8XNL>. 또한 미국(United States) v. 보텔로-로살레스(*Botello-Rosales*.), 728 F.3d 865, 867 (9th Cir. 2013) (경찰관의 스페인어 권고가 잘못 되었다는 판결); 미국 v. 앙헬레스-구즈만, 683 F. Supp.(*United States v. Angeles-Guzman*, 683 F. Supp. 2d 397, 400-01 (E.D.N.C. 2010) (용의자의 여자 친구를 통역사로 사용하는 것은 미란다 권리를 전달하기에 부적절했다) 참조.

3 42 U.S.C. §§ 2000d-7; 28 C.F.R. § 42.101-app. A (2023) (타이틀 6(Title VI) 규정)

많은 법 집행 기관들(LEA)은 또한 1968년 옴니버스 범죄 통제 및 안전한 거리법(Omnibus Crime Control and Safe Streets Act of 1968, 개정), 34 U.S.C. § 10228(c)(안전한 거리법, Safe Streets Act)에 따르는 연방 재정을 지원 받으며, 이 또한 출신 국가 차별을 금합니다.<sup>4</sup> 대법원이 언어와 출신 국가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오랫동안 인정해 왔기 때문에 언어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출신 국가 차별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타이틀 6(Title VI) 및 안전한 거리법(Safe Streets Act)를 오래 시행하면서 민권국은 언어 장벽이 법 집행 기관과 그들이 봉사하는 지역 사회 간의 정확한 의사 소통을 방해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의미 있는 접근을 제공하지 않을 때 범죄 보고가 위축되고, 영어 능력이 제한된(LEP) 피해자와 증인이 잘못된 조사와 심지어 부당한 체포를 당할 수 있으며, 경찰관과 일반 대중 모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sup>6</sup> 영어 능력이 제한된(LEP) 지역 사회 구성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충분한 계획, 절차 및 교육이 없으면 법 집행 기관들(LEA)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 어떤 사람이 영어 실력이 제한되어 있는지의 여부 확인;
- 영어 능력이 제한된(LEP) 개인과 소통 시 영어로 진행;
- 영어 능력이 제한된(LEP) 개인의 증언보다 영어를 사용하는 증인의 증언을 부적절하게 인정하는 행위;
- 자격이 없는 직원, 구경꾼, 가족 구성원 또는 언어 지원을 위한 자동/전자 응용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행위 및/또는
- 소환장과 같은 중요한 문서를 영어로만 제공.

이 분야에 대한 우리의 포괄적 업무를 통해 이 나라의 18,000개 이상의 법 집행 기관들(LEA) 간의 규모, 인구 통계 및 자원의 상당한 차이를 감안할 때 언어 요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만능 접근 방식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구는 또한 영어에 능숙하지 않은 사람들과 보다 원활한 의사 소통을 촉진하는 모범 사례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콜로라도주 덴버의 민권국과 미국 검찰청은 덴버 경찰서와 협력하여 영어에 능숙하지 않은 지역 사회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합의 각서 및 언어 접근 정책을 개발했습니다.<sup>7</sup> 덴버의 그 경찰서는 현직들의 업무 시간 동안 외 경찰 학교와 현장에서 언어 접근 교육을 개발, 제공 및 제도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덴버 경찰서는 또한 영어 능력이 제한된(LEP) 개인과의 의사 소통의 질과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경찰관이 업무에서 언어 능력을 사용할 자격을 부여하고 이 일에 대한 보상을 하기 전에 언어 능력을 시험합니다.

4 안전 거리법(Safe Streets Act), 34 U.S.C. § 10228(c)(1); 28 C.F.R. § 42.201-app. A (안전 거리 법 규정).

5 대법원은 영어 능력이 제한된(LEP) 사람들의 의미 있는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타이틀 6(Title VI) 규정에서 금지하는 출신 국가 차별의 한 형태라고 판결하면서 언어를 출신 국가와 연결했습니다. 라우 v. 니콜스(Lau v. Nichols), 414 U.S. 563 (1974) 참조.

6 예를 들어, 파디아 v. 뉴욕시(Padilla v. City of New York, No. 1:13-cv-00076 (E.D.N.Y. 2013년 11월 22일)) 중 2-3 페이지의 미국의 이해 관계 명세서, 참조

[https://www.justice.gov/sites/default/files/crt/legacy/2013/12/02/112213\\_SOI\\_Padilla\\_v\\_New\\_York\\_EDNY.pdf](https://www.justice.gov/sites/default/files/crt/legacy/2013/12/02/112213_SOI_Padilla_v_New_York_EDNY.pdf), 언어 접근과 관련된 법무부의 타이틀 6(Title VI) 집행 활동에 대한 포괄적인 개요는 <https://www.lep.gov/law-enforcement>에 있는 연방 기관 간 웹사이트인 LEP.gov의 법 집행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7 미합중국과 덴버 시 및 카운티, 덴버 경찰서 간의 합의 각서(2022년 12월 19일) <https://www.justice.gov/opa/press-release/file/1558796/download>; 제한된 영어 구사자(LEP)를 위한 덴버 경찰서의 언어 접근 서비스(2022년 12월 19일), <https://www.justice.gov/opa/press-release/file/1558801/download> 참조

실제로 LEA가 영어 능력이 제한된(LEP) 개인과 정확하고 시기 적절한 의사 소통을 보장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전부는 아닐지라도 다음과 같습니다.

- 자격을 갖춘 언어 접근 코디네이터 및/또는 연락 담당자를 각 구역에 임명하여 언어 접근 질문, 지침, 자원, 교육, 혁신 및 솔루션의 허브 역할을 합니다.
- 일반인 중 누가 영어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적절한 언어 지원 옵션을 찾는 방법을 식별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지침과 방향을 직원에게 제공하는 상세하고 포괄적인 정책 및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어린이, 가족, 친구 또는 자격 미달인 직원과 같은 자격이 없는 언어 지원 출처의 사용을 피합니다.
- 용의자로 추정되는 사람과 같은 편향된 언어 지원 출처의 사용을 피합니다.
- 중요한 서면 문서 및 정보의 적절한 번역을 마련합니다.
- 의견과 피드백을 얻기 위해 관련 커뮤니티 이해 관계자와 정기적이고 실질적인 의사 소통에 참여합니다.
- 강력하고 의미 있는 불만 처리 절차 및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구현합니다. 그리고
- 기존 직원, 신입 사원 및 이중 언어 직원을 포함한 각 직원 유형에 맞는 언어 접근 정책, 절차, 모범 사례, 케이스의 예, 자원 및 기타 정보에 대한 효과적이고 정기적인 대화형 교육을 제공합니다.

명확히 하자면, 타이틀 6(Title VI) 및 안전한 거리법(Safe Streets Act)에 따른 의무는 언어 지원이 필요한 개인과의 상호 작용에 적용되는 유일한 연방인권 보호책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청각 장애 또는 난청이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영어와 별개이며 독특한 언어인 미국 수화(ASL)를 사용하여 의사 소통하며 LEA는 그들과 효과적으로 의사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청각 장애인 및 난청인에게 효과적인 의사 소통을 제공해야 하는 LEA의 의무는 미국 장애인법(ADA)의 타이틀 2(Title II)의 적용을 받습니다. LEA는 해당 요구 사항도 준수해야 합니다.<sup>8</sup>

<sup>8</sup>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청각 장애인과 난청인은 법 집행 기관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콜로라도주의 코키 시마스코(Corky Siemaszko) 사건은 경찰이 청각 장애인 커뮤니티와 상호 작용하도록 훈련받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NBC 뉴스(2021년 9월 30일), <https://perma.cc/CJ6N-C4F4>; 법무부: 밴쿠버 경찰, 청각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개선, AP 통신(2022년 5월 25일), <https://perma.cc/LT5Z-8AJ6>.

<sup>9</sup> 타이틀 2(Title II)는 LEA를 포함한 주 및 지방 정부 기관이 프로그램, 서비스 및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 U.S.C. § 12132; 28 C.F.R. § 35. LEA는 장애인에게 원조, 혜택 또는 서비스에 참여하거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에 근거한 차별을 피하기 위해 합리적인 수정을 하고, 장애인과의 의사 소통이 다른 사람과의 의사 소통만큼 효과적인지 확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8 C.F.R. §§ 35.130(b)(1), (b)(7), 35.160(a)(1). 마찬가지로, 1974년 재활법(Rehabilitation Act of 1974)의 섹션 504는 연방 재정 지원 수혜자가 프로그램 및 활동에서 장애만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9 U.S.C. § 794. 자세한 지침은 미국 법무부 민권국의 *청각 장애인 또는 난청인과의 커뮤니케이션*(U.S. Dep't of Justice, Civil Rights Division, *Communicating with People Who Are Deaf or Hard of Hearing*), *법 집행관을 위한 ADA 가이드*(2020년 2월 25일 업데이트), [https://www.ada.gov/resources/law-enforcement-guide/#:~:text=Law%20enforcement%20agencies%20must%20provide.law%20enforcement%20services%20being%20Provided;](https://www.ada.gov/resources/law-enforcement-guide/#:~:text=Law%20enforcement%20agencies%20must%20provide.law%20enforcement%20services%20being%20Provided;:) 미국 법무부, 민권국, *ADA 요구 사항: 효과적인 의사 소통*(업데이트 됨)을 참조하십시오.

LEA와 영어 능력이 부족한 지역사회들을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는 2022년 12월에 법 집행 언어 접근 이니셔티브를 발족했습니다<sup>10</sup> 이 이니셔티브는 언어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실용적인 전략을 구현하기 위해 LEA와 긴밀히 협력한 민권국의 상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 이니셔티브를 통해 민권국은 LEA, 미국 검찰청 및 기타 이해 관계자 간의 지역 협력을 촉진하여 최신의 경험 기반 접근 방식을 자원이 필요에 맞게 조정하고 이러한 파트너십에서 나오는 추가 아이디어와 솔루션을 개발, 패키징 및 확대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자료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고 <https://www.lep.gov/law-enforcement>,에 게시되며, 이곳에는 최근 법적 합의 내용 및 기타 법 집행 자료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게시될 리소스를 검토하고, 동료에게 연락하여 언어 접근 정책 및 절차에 대해 논의하고, 귀하가 봉사하는 커뮤니티의 의견을 구하고, 샘플 언어 접근 원칙을 귀하의 기관에 적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법무부는 타이틀 6(Title VI), 안전 거리법(Safe Streets Act) 및 기타 연방 민권 의무 준수에 대해 LEA를 계속 검토하고 불만 사항을 조사할 것입니다. 민권국은 또한 교육 커리큘럼 제공, 언어 접근 초안 및 효과적인 의사 소통 정책 또는 절차 검토와 같은 LEA의 기술 지원 요청을 포함하여 LEA 및 기타 이해 관계자의 직접적인 의견을 환영합니다.

법 집행 언어 접근 이니셔티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LEALanguageAccess@usdoj.gov](mailto:LEALanguageAccess@usdoj.gov) 또는 (202) 307-2222로 민권국의 연방 조정 및 규정 준수 섹션에 언제든지 문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크리스틴 클라크  
민권국 법무차관보  
미국 법무부

<sup>10</sup> 2020년 2월 28일), <https://www.ada.gov/resources/effective-communication/>; 미국 법무부, 민권국, *미국 장애인법 및 법 집행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2020년 2월 28일 업데이트), <https://www.ada.gov/resources/commonly-asked-questions-law-enforcement/>. 청각 장애 또는 난청이 있는 개인을 위한 미국 장애인법 및 1974년 재활법 섹션 504에 따른 효과적인 의사 소통 요구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DA 정보 라인(ADA Information Line)에 800-514-0301(음성) 또는 1-833-610-1264(TTY)로 문의하십시오.  
10 보도 자료, 법무부, 새로운 언어 접근 법 집행 이니셔티브 발표(2022년 12월 19일) <https://www.justice.gov/opa/pr/justice-department-announces-new-language-access-law-enforcement-initiative>.